

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¹⁾는 2017. 8.부터 2020. 4.까지 31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함(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후원계약을 '이 사건 후원계약'이라 함)

1) 이 사건은 23명이 소제기하였으나, 제1심 패소판결 이후 5명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패소판결 이후 1명만 상고하였음

- 피고는 홈페이지에, ①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②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③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하여 후원계좌를 달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①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함
- ▣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폭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음
- ▣ 이에 원고는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 [참고] 민법 제109조에 따른 의사표시 착오 취소의 요건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2. 소송의 경과

▣ 제1심 ➡ 원고 패

- 이 사건 후원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음

▣ 원심 ➡ 항소기각

- 위자료 청구 부분의 이유를 수정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 ▣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야 함.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는 재산권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서, 목적의 표시 여부, 표시 주체와 방법, 쌍방의 목적 인식 여부, 목적의 구체성, 목적이 증여의 불가결한 기초 사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함.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음(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음

- ▣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후원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움

-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함
-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되어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인식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가 모집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 및 이에 의거하여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음
-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이 사건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그러함

4. 판결의 의의

- ▣ 대법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후원금 모집 단체가 표시하고 후원자가 인식하였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그 후원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함
- ▣ 대법원은, 행위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 더하여, 장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함